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2호 2019. 4. 1.(월요일)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200호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 훈 령

- 하동군 훈령 제351호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31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9-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차말\*)..... 33
- 하동군 고시 제2019-36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34
- 하동군 고시 제2019-37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5
- 하동군 고시 제2019-38호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고사..... 37
- 하동군 고시 제2019-43호      지방하천 점용 허가 고시(김중\*)..... 51
- 하동군 고시 제2019-44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변경)의 고시..... 53
- 하동군 고시 제2019-4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69
- 하동군 고시 제2019-46호      악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 71

##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19-343호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3
- 하동군 공고 제2019-353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8
- 하동군 공고 제2019-312호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01
- 하동군 공고 제2019-363호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17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880-2041, 행정2041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9-325호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미급·9급상당,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채용 계획 재공고 122
- 하동군 공고 제2019-328호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 136
- 하동군 공고 제2019-350호 하동군 다자녀가족 행복수기 공모..... 138
- 하동군 공고 제2019-356호 하동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141
- 하동군 공고 제2019-386호 하동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146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1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 1200 호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 부개정규칙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집중

유치업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제1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  
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집중유치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sup>2</sup>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  
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첨단업종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sup>2</sup>당 지원단가는 63,84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  
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  
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  
정자금 지원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포상금 지급신청”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포상금 지원기준은 별표를 따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 중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투자유치 포상 기준(제28조제4항 관련)

구 분	기 준				
포상대상	민간인, 기관단체, 공무원				
포상종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포상금 산정액 (①)	유치구분	투자규모	성 과 금	상한액	
	투자금액 (민간인, 기관단체)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1(0.1%)		1,0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 0.0004(0.04%) + 1,000만원		2,60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 0.0003(0.03%) + 2,600만원		4,10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 × 0.0002(0.02%) + 4,100만원		2억원
	투자금액 (공무원)	50억원 ~ 100억원	투자금액 × 0.0002(0.02%)		200만원
		100억원 초과 ~ 500억원	(투자금액-100억원) × 0.00004(0.004%) + 200만원		360만원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투자금액-500억원) × 0.00003(0.003%) + 360만원		510만원
		1,000억원 초과	(투자금액-1,000억원) × 0.00002(0.002%) + 510만원		2,000만원
	포상금 적용율 (②)	적용율	적 용 대 상		
		10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		투자자 발굴, 정보입수 후 주관부서로 이관 추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상금 지급액 = 산정액(× 적용율(③))</li> <li>○투자금액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비</li> <li>○외국인투자는 미화를 포상금 지급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적용</li> <li>○모든 포상은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li> </ul>				



[별지 제2호서식]

### 분 양 가 차 액 보 조 금 신 청 서

지 원 대 상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법인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input type="checkbox"/> 창업		<input type="checkbox"/> 공장증설	
투 자 유 형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합작 (   %)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총분양금액	천원		분양가(원/m <sup>2</sup> )	
분양면적(m <sup>2</sup> )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율(%)
공장착공일 (공장설립예정일)			업 종 (분류번호)	(           )
외국인투자금액	만원(USD    상당)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명 명
보조금신청액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투자실행이행 각서 사본 1부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별지 제3호서식]

<b>고 용 보 조 금 신 청 서</b>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 국 인 투 자 내 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
투 자 방 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신 규 <input type="checkbox"/> 증 자		사업개시(예정)일		
소재지					
설립(이전)일자					
업종(주생산품)					
상시 고용인원	총 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 신청액	만원(USD      상당)				
<p>「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p> <p><b>하동군수 귀하</b></p>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p>1. 고용사실증명서 1부</p> <p>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p> <p>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p> <p>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p>					



[별지 제5호서식]

시 설 보 조 금 신 청 서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	현 금	자본채		산업재산권등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 규		<input type="checkbox"/> 증 자		사업개시(예정)일				
시 설 내 역	소재지								
	착공일 (건축허가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신·증설 개요		시설	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금액						
보 조 금 신 청 액		만 원(USD			상당)				
<p>「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 남 / 여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p> <p>하동군수 귀하</p>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p>1. 신설 또는 증설한 설비 내역서 1부</p> <p>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p> <p>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p> <p>4. 기타 공장시설 투자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p>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		
			FAX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학교시설 <input type="checkbox"/> 주택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원시설				
시설현황	소재지				
	면적	부지	건축		
		m <sup>2</sup>	m <sup>2</sup>		
	건물구조				
건축 허가일		준공일			
투자유형	<input type="checkbox"/> 신 축 <input type="checkbox"/>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	금                      원 (USD                      상당)				
보조금 신청액					
학교시설 :	원	주택 :	원	지원시설 :	원
<p>「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시설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 :                      ( 남 / 여 ) (인)           </p> <p>하동군수 귀하</p>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내역서 1부</li> <li>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li> <li>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li> </ol>					





[별지 제9호서식]

**입 지 보 조 금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	
			FAX	
입주유형	창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                      )			
분양가	원/평	분양가납부방법	년거치 분할상환	
분양면적	공장용지면적(m <sup>2</sup> )	건축면적(m <sup>2</sup> )	기존공장면적율(%)	
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		업종 (분류번호)		
공장시설투자금액	백만원	신규채용상시근로자	명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USD                      상당)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남 / 여 ) (인)

하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수 수 료
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 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 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 시설투자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신규채용 상시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6호서식]

###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E-mail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농공단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입주업종	<input type="checkbox"/>					
기존공장소재지	번지		신규공장소재지 (산업·농공단지명)	(번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m <sup>2</sup> )	천원		
분양(매입)면적(m <sup>2</sup> )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율(%)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공장착공일 (준공예정일)		업종 (분류번호)	( )	
신설공장투자금액 (a+b+c)	천원		상시고용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건축비 (토지구입 및 임대료포함) (a)	천원	시설장비 구입비(b)	천원	기본시설 설치비(c)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p>「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남 / 여 ) (인)</p> <p>하동군수 귀하</p>						
<p><b>구비서류</b></p> <p>1. 사업계획서(사업내용, 제품, 생산, 수출 등) 1부</p> <p>2. 연차별 투자계획서 1부.</p> <p>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자금제공 확인서(차입약정서), 투자자금 보관통장사본 1부.</p>						













<신 설>

3. (생 략)

②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3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집중유치업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첨단업종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  
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집중  
유치업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sup>2</sup>당 지원단가는 76,61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첨단업종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의 경우 분양가액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이 경우 m<sup>2</sup>당 지원단가는 63,84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보조금을 지  
원받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군수가 기업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 이상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생략)  
 ③ 조례 제31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제28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최초 투자날부터 5년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 후 6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한다.  
 ③ (생략)  
 ④ 포상금 지원기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경영하여야 한다.

제25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

제28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③ (현행과 같음)  
 ④ 포상금 지원기준은 별표를 따르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9조(준용) -----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기준」을 준용한다.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9년 4월 1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훈령 제 351 호

###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분증 사본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임의변제) ① (생 략)</p> <p>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3. <u>인감증명서</u></p> <p>4. · 5. (생 략)</p>	<p>제28조(임의변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신분증 사본</u></p> <p>4. · 5. (현행과 같음)</p>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2019-35호

## 공유수면 점용 · 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 명 차 말 *	생년월일(성별) 61.05.13. (여)
	전화번호 055-265-****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주 소	

장소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산214-1(구) (인접 산232-5) 36㎡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201-18(구) (인접 산214-2) 31㎡

면적(또는 채취량 · 투기량) 67㎡ (또는 ㎡)

목적

진 · 출입로 확보

기간

영구

점용 · 사용의 유형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해당없음

###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2. 타 법령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은 개별법에 의거 허가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3. 허가면적 ·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면적의 추가나 계획변경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공공사업 등 허가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언제든지 점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허가자가 복구요청시에는 이의없이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5. 점용으로 인한 유수의 지장 발생시 즉시 자진하여 철거 및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 사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3월 12일

## 하 동 군 수 (인)

###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변경) 공고

공고 제2019-36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13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613-83-01036)		
	대표자 (성명)	유재*	주소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 386
소하천명		두양천		
공사(점용·사용)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두양리 1073-127 천 523㎡ 경남 하동군 두양리 1073-204 천 338㎡		
	면적	일시점용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영구점용	861	
	기간	영구점용	영구(사업기간 : 2019년 3월 일 ~ 2019년 5월 일)	
목적 및 사유	본 공사는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황폐계류에 수로를 정비하고 토사유출을 예방하여 재해 및 위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토보전 및 자연 환경을 유지코져 함.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19 - 37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15.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62 외 8필지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3.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152-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262	20190315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15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도길 117-17	20190315		20090302	섬이 크다하여 붙여진 섬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17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뫼골길 52	20190315		20080402	법대리의 서쪽 산기슭에 있어 산자와 곡자를 딴 이름을 붙여 뫼골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754-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사등마을길 103-8	20190315		20080402	사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478-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선장길 105-12	20190315		20070618	배가 닿는 나루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966, 964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온동길 49	20190315		20080402	예부터 따뜻한 물이 나온다하여 붙여진 온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7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중터길 32-1	20190315		20070618	남쪽의 새터가 생기자 중터라고 부른 옛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785-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큰삼내길 11	20190315		20080402	큰삼내라는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639-1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232	20190315		2007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신설] 1개 노선

도로의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다른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km)
군도	27	가덕~진정	금성 가덕 1599-1	금남 진정 707-1	금성-금남	6.3	-	-

[변경] 20개 노선

도로의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구분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다른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km)
군도	1	신대-서리	당초	악양 신대	적량 서리	-	9.8		
			변경	악양 신대 629	적량 서리 697-2	악양-적량	9.8		
군도	2	원탑-범왕	당초	화개 탑	화개 범왕	-	17.1		
			변경	화개 탑 산88-3	화개 범왕 산267-4	화개	14.6		
군도	3	고절-운암	당초	적량 고절	양보 장암	-	5.1		
			변경	적량 고절 산50-1	양보 장암 393-5	적량-고절-양보	5.9	군도18호선	0.4
군도	4	미점-정서	당초	악양 미점	악양 정서	-	3.9		
			변경	악양 미점 산47-3	악양 정서 277-11	악양	3.9		
군도	6	노량-신방	당초	금남 노량	고전 전도	-	21.0		
			변경	금남 노량 826-1	고전 전도 1056-2	금남-금성-고전	22.8		
군도	7	하동-홍룡	당초	하동 읍내	하동 홍룡	-	21.9		
			변경	하동 읍내 222-10	하동 화심 77	하동-적량-하동	27.3	국도19호선 군도2호선 군도25호선	2.1
군도	8	남산-명호	당초	횡천 남산	청암 명호	-	16.1		
			변경	횡천 남산 296-42	청암 명호 264	횡천-적량-청암	16.1		
군도	10	금남-장재기	당초	청암 중이	청암 목계	-	8.6		
			변경	청암 중이 823-2	청암 목계 58-2	청암	8.6		
군도	11	평촌-종화	당초	청암 평촌	옥종 종화	-	17.4		
			변경	청암 평촌 554-3	옥종 종화 231-27	청암-횡천-옥종	17.9	국도59호선	0.2
군도	12	덕천-송원	당초	금남 덕천	진교 송원	-	10.1		
			변경	금남 덕천 813	진교 송원 51-19	금남-진교	10.1		

<표계속>

도로의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구분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다른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연장(km)
군도	15	전도-명교	당초	고전 전도	고전 명교	-	8.1		
			변경	고전 전도 224-1	고전 명교 182-6	고전	8.1	군도17호선	0.2
군도	16	진정-갈사	당초	금남 진정	금성 갈사	-	12.8		
			변경	금남 진정 1039-3	금성 갈사 188	금남-금성	13.3	국도59호선	0.5
군도	17	가덕-우복	당초	금성 가덕	양보 우복	-	23.3		
			변경	금성 가덕 310	양보 우복 산186-5	금성-금남- 고전-양보	25.0	국도19호선 지방도1008호선 군도15호선	1.0
군도	18	범아-우복	당초	고전 범아	양보 우복	-	11.3		
			변경	고전 범아 310-2	양보 우복 487-2	고전-양보	11.9	지방도1008호선 군도3호선	1.0
군도	19	지례-진교	당초	양보 운암	진교 진교	-	10.2		
			변경	양보 운암 28	진교 진교 302-11	양보-진교	10.2		
군도	20	노량-고이	당초	금남 노량	진교 고이	-	15.7		
			변경	금남 노량 521-2	진교 고이 산78-1	금남-진교	15.7		
군도	21	양구-곤명	당초	옥중 양구	옥중 정수	-	2.2		
			변경	옥중 양구 480-11	옥중 정수 산36-2	옥중	2.2		
군도	22	돌고지-화정	당초	횡천 전대	북천 서황		5.9		
			변경	횡천 전대 산108-3	북천 서황 474-2	청암-횡천-북천	5.9		
군도	23	북방-곤명	당초	옥중 대곡	옥중 북방	-	4.0		
			변경	옥중 대곡 174-6	옥중 북방 산58-2	옥중	4.0		
군도	25	신월-화산	당초	고전 신월	하동 비파	-	8.5		
			변경	고전 신월 1448-4	하동 비파 산8-3	고전-적량-하동	8.5	군도7호선	0.2



### 군도 노선의 변경 내역

■ 군도1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1	1
노선명	신대~서리	신대~서리
기점	악양 신대	악양 신대 629
종점	적량 서리	적량 서리 697-2
주요 통과지	-	악양-적량
총연장(킬로미터)	9.8	9.8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킬로미터)	-

■ 군도2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2	2
노선명	원탑~범왕	원탑~범왕
기점	화개 탑	화개 탑 산88-3
종점	화개 범왕	화개 범왕 산267-4
주요 통과지	-	화개
총연장(킬로미터)	17.1	14.6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킬로미터)	-

■ 군도3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3	3
노선명		고절~운암	고절~운암
기점		적량 고절	적량 고절 산50-1
종점		양보 장암	양보 장암 393-5
주요 통과지		-	적량-고절-양보
총연장(킬로미터)		5.1	5.9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군도18호선
	연장(킬로미터)	-	0.4

■ 군도4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4	4
노선명		미점~정서	미점~정서
기점		악양 미점	악양 미점 산47-3
종점		악양 정서	악양 정서 277-11
주요 통과지		-	악양
총연장(킬로미터)		3.9	3.9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
	연장(킬로미터)	-	-

■ 군도6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6	6
노선명		노량~신방	노량~신방
기점		금남 노량	금남 노량 826-1
종점		고전 전도	고전 전도 1056-2
주요 통과지		-	금남-금성-고전
총연장(킬로미터)		21.0	22.8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
	연장(킬로미터)	-	-

■ 군도7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7	7
노선명		하동~홍룡	하동~홍룡
기점		하동 읍내	하동 읍내 222-10
종점		하동 홍룡	하동 화심 77
주요 통과지		-	하동-적량-하동
총연장(킬로미터)		21.9	27.3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국도19호선(1.1km) 군도 2호선(0.8km) 군도25호선(0.2km)
	연장(킬로미터)	-	2.1

■ 군도8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8	8
노선명	남산~명호	남산~명호
기점	횡천 남산	횡천 남산 296-42
종점	청암 명호	청암 명호 264
주요 통과지	-	횡천-적량-청암
총연장(킬로미터)	16.1	16.1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킬로미터)	-

■ 군도10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10	10
노선명	금남~장재기	금남~장재기
기점	청암 중이	청암 중이 823-2
종점	청암 목계	청암 목계 58-2
주요 통과지	-	청암
총연장(킬로미터)	8.6	8.6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킬로미터)	-

■ 군도11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11	11	
노선명	평촌~종화	평촌~종화	
기점	청암 평촌	청암 평촌 554-3	
종점	옥중 종화	옥중 종화 231-27	
주요 통과지	-	청암-횡천-옥중	
총연장(킬로미터)	17.4	17.9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국도59호선
	연장(킬로미터)	-	0.2

■ 군도12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12	12	
노선명	덕천~송원	덕천~송원	
기점	금남 덕천	금남 덕천 813	
종점	진교 송원	진교 송원 51-19	
주요 통과지	-	금남-진교	
총연장(킬로미터)	10.1	10.1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
	연장(킬로미터)	-	-

■ 군도15호선

구 분	기 준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15	15	
노선명	전도~명교	전도~명교	
기점	고전 전도	고전 전도 224-1	
종점	고전 명교	고전 명교 182-6	
주요 통과지	-	고전	
총연장(킬로미터)	8.1	8.1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국도17호선
	연장(킬로미터)	-	0.2

■ 군도16호선

구 분	기 준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16	16	
노선명	진정~갈사	진정~갈사	
기점	금남 진정	금남 진정 1039-3	
종점	금성 갈사	금성 갈사 188	
주요 통과지	-	금남-금성	
총연장(킬로미터)	12.8	13.3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국도59호선
	연장(킬로미터)	-	0.5

■ 군도17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17	17
노선명		가덕~우복	가덕~우복
기점		금성 가덕	금성 가덕 310
종점		양보 우복	양보 우복 산186-5
주요 통과지		-	금성-금남-고전-양보
총연장(킬로미터)		23.3	25.0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국도 19호선(0.6km) 지방도1003호선(0.2km) 군도 15호선(0.2km)
	연장(킬로미터)	-	1.0

■ 군도18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18	18
노선명		범아~우복	범아~우복
기점		고전 범아	고전 범아 310-2
종점		양보 우복	양보 우복 487-2
주요 통과지		-	고전-양보
총연장(킬로미터)		11.3	11.9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지방도1003호선(0.6km) 군도 3호선(0.4km)
	연장(킬로미터)	-	1.0

■ 군도19호선

구 분	기 준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19	19
노선명	지례~진교	지례~진교
기점	양보 운암	양보 운암 28
종점	진교 진교	진교 진교 302-11
주요 통과지	-	양보-진교
총연장(킬로미터)	10.2	10.2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킬로미터)	-

■ 군도20호선

구 분	기 준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20	20
노선명	노량~고이	노량~고이
기점	금남 노량	금남 노량 521-2
종점	진교 고이	진교 고이 산78-1
주요 통과지	-	금남-진교
총연장(킬로미터)	15.7	15.7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킬로미터)	-



■ 군도21호선

구 분	기 준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21	21
노선명	양구~곤명	양구~곤명
기점	옥종 양구	옥종 양구 480-11
종점	옥종 정수	옥종 정수 산36-2
주요 통과지	-	옥종
총연장(킬로미터)	2.2	2.2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킬로미터)	-

■ 군도22호선

구 분	기 준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22	22
노선명	돌고지~화정	돌고지~화정
기점	횡천 전대	횡천 전대 산108-3
종점	북천 서황	북천 서황 474-2
주요 통과지	-	청암-횡천-북천
총연장(킬로미터)	5.9	5.9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연장(킬로미터)	-

■ 군도23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23	23
노선명		북방~곤명	북방~곤명
기점		옥중 대곡	옥중 대곡 174-6
종점		옥중 북방	옥중 북방 산58-2
주요 통과지		-	옥중
총연장(킬로미터)		4.0	4.0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
	연장(킬로미터)	-	-

■ 군도25호선

구 분		기 존	변 경
도로의 종류		군도	군도
노선번호		25	25
노선명		신월~화산	신월~화산
기점		고전 신월	고전 신월 1448-4
종점		하동 비파	하동 비파 산8-3
주요 통과지		-	고전-적량-하동
총연장(킬로미터)		8.5	8.5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구간	-	군도7호선
	연장(킬로미터)	-	0.2

#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제2019-43호

주 소	하동군 화개면 목압길 8 (010-5228-2824)		
성명(법인명)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위원장 김종*		
생년월일			
하천명칭	화개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화개면 탐리 851번지		
점용면적	3,500㎡		
최초허가일	2019년 03월 20일		
점용기간	2019. 03. 20 ~ 2019. 04. 15.		
허가조건	<p>1. 붙임 허가조건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p> <p>2. 행사장 안전관리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9년 03월 20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 가 조 건

1. 본 공사의 시행은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5.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6. 점용허가 구간 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 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7. 일시 점용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8.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9.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2.25>

고시 제 호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6조제5항(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도로의 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3 월 19 일

하동군수 [인]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 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면도(12개 노선)						31.8		
하동	면도	연화선	하동101	읍내리 122-21	읍내리 산25-1	2.0		노선변경
하동	면도	두우선	하동102	화심리 316-1	두곡리 산121-2	3.0		노선변경
적량	면도	계성선	적량101	동산리 1299-1	관리 122-5	3.5		노선변경
적량	면도	뒷밤골선	적량103	관리 728	관리 산 111-1	1.0		노선변경
적량	면도	두우선	적량104	우계리 1533-1	우계리 산371	0.6		노선변경
횡천	면도	동장선	횡천101	학리 1152-54	학리 산194	1.4		노선변경
고전	면도	시목선	고전101	신월리 1318-20	범아리 1087	4.0		노선변경
고전	면도	상성선	고전102	성천리 산34-3	성천리 산278	2.0		노선변경
금남	면도	대치선	금남101	대송리 832-9	대치리 155-1	7.0		노선변경
진교	면도	월고선	진교101	고이리 산81-1	월운리 산170	4.9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양보	면도	통고선	양보102	통정리 284-2	통정리 산38-1	1.8		노선변경
양보	면도	하장암선	양보103	장암리 706-1	장암리 737-4	0.6		변경없음
리도(116개 노선)						284.4		
하동	리도	두울선	하동202	두곡리 산16-2	두곡리 346	1.4		노선변경
하동	리도	두신선	하동203	화심리 939-4	두곡리 687-8	3.5		노선변경
하동	리도	화두선	하동204	비파리 330-2	두곡리 643-1	2.6		노선변경
하동	리도	두흥선	하동207	홍룡리 933-3	홍룡리 1121	1.5		노선변경
하동	리도	만지선	하동208	두곡리 974-4	두곡리 316-2	3.2		노선변경
하동	리도	신목선	하동209	고절리 1211-14	신기리 76-3	5.1		노선변경
화개	리도	부춘선	화개201	부춘리 629-5	부춘리 산1	5.3		노선변경
화개	리도	삼정선	화개202	탑리 227-6	정금리 1112-3	2.5		노선변경
화개	리도	범하선	화개203	삼신리 594-2	삼신리 902	1.7		노선변경
화개	리도	삼용선	화개204	삼신리 225-2	용강리 593	3.2		노선변경
화개	리도	용모선	화개205	용강리 산93-2	용강리 산17-1	3.0		노선변경
화개	리도	대단선	화개207	대성리 산177-7	대성리 315	1.6		노선변경
화개	리도	만황선	화개210	용강리 414-5	용강리 1303	1.7		노선변경
화개	리도	삼부선	화개211	정금리 1371	정금리 1325	2.1		노선변경
화개	리도	목통선	화개212	범왕리 산195-3	범왕리 산176	2.5		노선신설 (군도2호선일 부구간격하)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악양	리도	신상선	악양201	신흥리 927-3	신흥리 465	1.5		노선변경
악양	리도	매중선	악양202	매계리 117-3	동매리 398-2	1.8		노선변경
악양	리도	정노선	악양203	정서리 257-2	매계리 993	1.5		노선변경
악양	리도	덕성선	악양204	신성리 927-2	신성리 산25-1	1.6		노선변경
악양	리도	평중선	악양205	동매리 482-5	동매리 432-1	1.8		노선변경
악양	리도	매노선	악양206	매계리 126-2	동매리 산45-3	3.5		노선변경
악양	리도	정동선	악양207	정서리 265-1	정서리 615-1	3.2		노선변경
악양	리도	봉입선	악양208	봉대리 465-22	입석리 189-2	3.3		노선변경
악양	리도	미점선	악양209	동매리 903	동매리 산23	1.2		노선변경
악양	리도	미축선	악양210	미점리 산89-4	축지리 438-3	3.1		노선변경
악양	리도	미남선	악양211	미점리 425-6	미점리 797	1.2		노선신설
악양	리도	정입선	악양212	입석리 14-2	정동리 590-2	1.2		노선신설
적량	리도	서동선	적량201	동리 1246	서리 1102-2	2.5		노선변경
적량	리도	관우선	적량203	우계리 산112-16	서리 1766-3	2.2		노선변경
적량	리도	중도선	적량204	동산리 1779-1	고절리 1188-10	2.3		노선변경
적량	리도	영신원선	적량206	동산리 580	우계리 산261-1	1.7		노선변경
적량	리도	명천선	적량207	동리 341-1	동리 85-1	1.2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적량	리도	율동선	적량208	관리 325	관리 산100	1.3		노선변경
적량	리도	죽명선	적량209	관리 122-2	동리 산250-1	2.4		노선변경
적량	리도	동죽선	적량210	동산리 산176-1	동산리 633-3	0.8		변경없음
적량	리도	우명선	적량211	관리 950	우계리 1324-4	3.0		노선변경
적량	리도	대티선	적량212	동산리 633-3	관리 42-3	0.6		노선신설
횡천	리도	죽전선	횡천201	전대리 863	전대리 1359	1.3		노선변경
횡천	리도	전대선	횡천202	전대리 516-2	애치리 1206	2.3		노선변경
횡천	리도	상원선	횡천203	남산리 268	남산리 1205	1.1		노선변경
횡천	리도	중마선	횡천204	횡천리 507-2	동산리 177-3	3.4		노선변경
횡천	리도	안전선	횡천205	전대리 1385	전대리 1086-5	2.2		노선변경
횡천	리도	전대선	횡천206	전대리 1385	전대리 산191	1.2		노선변경
횡천	리도	여신선	횡천207	여의리 409-6	애치리 산182-6	2.3		노선변경
횡천	리도	횡계선	횡천208	여의리 657-1	횡천리 159-1	1.6		노선변경
횡천	리도	횡보선	횡천209	횡천리 754-3	명호리 96	4.0		노선변경
횡천	리도	마치선	횡천210	학리 1166-3	학리 산106	1.0		노선변경
횡천	리도	원곡선	횡천212	남산리 1192	남산리 산48	1.7		노선변경
횡천	리도	시전선	횡천213	전대리 546-3	월평리 725-2	1.0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 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고전	리도	월진선	고전201	전도리 881	전도리 599-1	1.4		노선변경
고전	리도	범사선	고전202	전도리 548-3	범아리 1083-7	3.6		노선변경
고전	리도	사주선	고전205	신월리 1470	고하리 1021-6	5.9		노선변경
고전	리도	율촌선	고전208	범아리 278-3	성천리 672	1.2		노선변경
고전	리도	신방촌선	고전209	전도리 334-2	전도리 1118-1	1.8		노선신설 (구국도 반영)
금남	리도	상중선	금남201	중평리 754-9	중평리 112-1	1.4		노선변경
금남	리도	대치선	금남202	대치리 671-12	대치리 산125-8	1.6		노선변경
금남	리도	대환선	금남204	대송리 857	대송리 442-2	1.7		노선변경
금남	리도	금진선	금남205	대송리 857	진정리 642-2	2.6		노선변경
금남	리도	영사선	금남206	계천리 357-1	덕천리 329-4	2.3		노선변경
금남	리도	영계선	금남207	계천리 298-1	계천리 661-3	1.3		노선변경
금남	리도	대운선	금남208	대치리 1144-1	대치리 산110	1.1		노선변경
금남	리도	대사선	금남210	대송리 333-6	대송리 427-21	1.6		노선변경
금남	리도	대진선	금남211	대송리 857	진정리 산104-12	2.8		노선변경
금남	리도	대문선	금남212	대송리 산55-7	송문리 231-9	2.0		노선신설
금남	리도	대노선	금남213	대치리 산101-44	노량리 540-2	2.6		노선신설
금성	리도	회객선	금성201	궁항리 산9-1	궁항리 산122-2	3.0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금성	리도	궁가선	금성202	궁항리 1048	가덕리 1151-111	2.4		노선변경
금성	리도	명궁선	금성203	가덕리 310-9	궁항리 657	5.5		변경없음
금성	리도	용고선	금성204	궁항리 601-32	궁항리 543-64	4.1		노선변경
금성	리도	내도선	금성205	고포리 42-2	갈사리 1227	3.6		노선변경
금성	리도	광포선	금성206	가덕리 1113-15	가덕리 1113-345	1.8		노선변경
금성	리도	궁신선	금성207	궁항리 산66-4	궁항리 1381	2.5		노선변경 (농도에서 승격)
진교	리도	양대선	진교201	양포리 62	양포리 산97-1	1.4		노선변경
진교	리도	평원선	진교202	술상리 산55-1	고룡리 284-1	3.6		노선변경
진교	리도	율곡선	진교203	송원리 산64-2	고이리 639-12	2.9		노선변경
진교	리도	송고선	진교204	송원리 302-2	고이리 759-7	2.0		노선변경
진교	리도	월운선	진교205	관곡리 710-8	월운리 191	3.0		노선변경
진교	리도	평양선	진교206	양포리 산37-1	양포리 803-1	5.0		노선변경
진교	리도	백운선	진교207	백련리 84	관곡리 861	2.1		노선변경
진교	리도	구갑선	진교208	관곡리 산191-1	관곡리 616-2	1.4		노선변경
진교	리도	서관선	진교209	관곡리 240-5	관곡리 33-7	2.9		노선변경
양보	리도	우신선	양보201	운암리 724-18	감당리 457	3.8		노선변경
양보	리도	구서선	양보202	통정리 494-1	박달리 973	3.1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양보	리도	화원선	양보204	지례리 302-1	박달리 557	2.1		노선변경
양보	리도	피하선	양보205	우복리 1082-1	감당리 산240	3.3		노선변경
양보	리도	중상선	양보206	감당리 1016-3	장암리 1018-3	1.1		노선변경
양보	리도	하우선	양보207	장암리 687	운암리 산42-2	1.6		노선변경
양보	리도	만가선	양보208	지례리 1196	지례리 1175	5.6		노선변경
양보	리도	동촌선	양보209	우복리 447	우복리 산10	1.2		노선변경
양보	리도	상대선	양보210	장암리 555-5	우복리 1462	2.2		노선변경
양보	리도	신원선	양보211	장암리 983-1	감당리 1598	1.3		노선변경
양보	리도	박통선	양보212	박달리 978	통정리 1007	1.4		노선신설 (군도19호선일 부구간격하)
북천	리도	서황선	북천203	서황리 635-2	서황리 886	1.4		노선변경
북천	리도	방장선	북천204	방화리 74-2	화정리 1561-14	3.2		노선변경
북천	리도	신안선	북천205	옥정리 504-1	옥정리 산21	2.1		노선변경
북천	리도	중상선	북천206	화정리 산225-1	서황리 산327-1	3.6		노선변경
북천	리도	중촌선	북천207	서황리 554-3	서황리 산200-3	2.0		노선변경
북천	리도	사직선	북천208	사평리 455-1	직전리 1083-1	5.8		노선변경
청암	리도	양지선	청암203	평촌리 1039-5	상이리 508-2	3.6		노선변경
청암	리도	사하선	청암205	명호리 1179-1	평촌리 1313-2	2.6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청암	리도	명사선	청암206	명호리 1533	명호리 951	0.9		노선변경
옥중	리도	원법선	옥중201	법대리 332-1	병천리 912	2.6		노선변경
옥중	리도	고암선	옥중202	월횡리 355-1	월횡리 470	1.3		노선변경
옥중	리도	방끝선	옥중203	종화리 229-2	종화리 579	2.9		노선변경
옥중	리도	가대선	옥중204	문암리 153-11	문암리 산38-1	1.4		노선변경
옥중	리도	영북선	옥중205	정수리 923	북방리 888-1	4.4		노선변경
옥중	리도	양구선	옥중206	병천리 694-2	양구리 772-2	2.2		노선변경
옥중	리도	정추선	옥중208	정수리 137	대곡리 499	4.0		노선변경
옥중	리도	두양선	옥중209	두양리 28-1	병천리 223	6.8		노선변경
옥중	리도	문암선	옥중210	안계리 813-1	병천리 963	1.8		노선변경
옥중	리도	가문선	옥중211	안계리 220-2	문암리 496-3	1.8		노선변경
옥중	리도	추불선	옥중212	대곡리 429-1	대곡리 1064	1.6		변경없음
옥중	리도	원회선	옥중213	회신리 434	회신리 900-2	1.8		노선변경
옥중	리도	신기선	옥중214	회신리 52-11	궁항리 419-3	3.4		노선변경
옥중	리도	궁중선	옥중215	궁항리 1130-3	상이리 646	5.5		노선변경
옥중	리도	궁중선	옥중216	위태리 1699-2	위태리 산279-5	2.0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농도(124개 노선)						260.6		
하동	농도	궁문선	하동301	신기리 77-4	목도리 205-1	2.8		노선변경
하동	농도	목도선	하동302	신기리 104-16	목도리 226	3.2		노선변경
하동	농도	비신선	하동303	신기리 142-4	비파리 13-2	1.5		노선변경
하동	농도	읍신선	하동304	신기리 138	비파리 647-1	2.3		노선변경
하동	농도	비광선	하동305	비파리 312-10	광평리 78-7	1.6		노선변경
하동	농도	광평선	하동306	읍내리 127-1	광평리 95	1.4		노선변경
하동	농도	선장선	하동309	화심리 1694-16	화심리 산112-2	1.9		노선변경
하동	농도	문도선	하동310	목도리 226	목도리 47-38	2.0		노선변경
하동	농도	홍룡선	하동312	홍룡리 1478-2	홍룡리 산38	1.5		노선변경
화개	농도	신상선	화개301	부춘리 650-3	덕은리 725	2.4		노선변경
화개	농도	상덕선	화개302	덕은리 806-3	덕은리 867-4	2.9		노선변경
화개	농도	중촌선	화개303	정금리 232	정금리 산2	2.9		노선변경
악양	농도	봉평선	악양301	평사리 208-4	입석리 110-5	2.0		노선변경
악양	농도	성신선	악양303	신성리 531-16	신대리 산5	3.0		노선변경
악양	농도	덕기선	악양304	등촌리 943	등촌리 산101	2.7		노선변경
악양	농도	입석선	악양305	입석리 646-1	정서리 185-4	2.9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악양	농도	외둔선	악양306	평사리 889	봉대리 4-5	2.7		노선변경
악양	농도	동정선	악양307	평사리 1003-1	입석리 80	2.2		노선변경
악양	농도	축지선	악양308	평사리 42-10	입석리 110-5	2.3		노선변경
악양	농도	외미선	악양311	평사리 1229	봉대리 622-6	1.9		노선변경
악양	농도	하대선	악양312	봉대리 615-1	봉대리 615-1	1.1		노선변경
악양	농도	신흥선	악양314	신흥리 980-3	정동리 산3-1	1.7		노선변경
적량	농도	고석선	적량301	신월리 859-1	고절리 산128-5	1.1		노선변경
적량	농도	죽지선	적량302	동산리 9-2	동산리 1774-4	0.9		노선변경
적량	농도	하상선	적량303	동산리 139-2	동산리 198	1.0		변경없음
적량	농도	상동선	적량304	고절리 940	동산리 산100-1	1.2		노선변경
적량	농도	율동선	적량305	동산리 633-3	관리 952	1.0		노선변경
적량	농도	상우선	적량306	우계리 173-5	우계리 704	1.6		노선변경
적량	농도	명이선	적량307	동리 1463	동리 산303-1	3.2		노선변경
적량	농도	중서선	적량309	동리 1457	서리 1730	2.7		노선변경
적량	농도	서동선	적량310	우계리 1478-1	서리 산334	1.4		노선변경
적량	농도	화련선	적량311	동산리 산285-3	고절리 738	2.2		노선변경
적량	농도	하두선	적량313	고절리 산219-2	동산리 850-2	1.2		변경없음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횡천	농도	은동선	횡천301	애치리 1207	애치리 산73	1.7		노선변경
횡천	농도	횡천선	횡천302	횡천리 1019-1	월평리 520-9	1.6		노선변경
횡천	농도	하남선	횡천303	남산리 1188	남산리 1195	2.2		노선변경
횡천	농도	죽전선	횡천304	전대리 429	전대리 산148	2.9		노선변경
횡천	농도	구여선	횡천305	여의리 622-2	여의리 산174-7	1.9		노선변경
고전	농도	전도선	고전301	전도리 227-7	전도리 673-17	4.0		노선변경
고전	농도	조진선	고전302	대덕리 189-1	성평리 595-1	1.4		노선변경
고전	농도	홍조선	고전303	고하리 1036	고하리 775-1	1.3		노선변경
고전	농도	성신선	고전304	고하리 146-2	성평리 742	2.7		노선변경
고전	농도	주일선	고전305	명교리 200-1	성평리 산74-1	2.7		노선변경
고전	농도	일명선	고전306	명교리 201-2	명교리 630-5	3.5		노선변경
고전	농도	노시선	고전308	신월리 316-6	신월리 1444-10	1.8		노선변경
고전	농도	합진선	고전310	대덕리 452-1	대덕리 179-1	1.5		노선변경
고전	농도	명교선	고전311	명교리 490-1	명교리 380-1	1.5		노선변경
고전	농도	사성선	고전312	신월리 708-3	성천리 909-1	1.8		노선변경
고전	농도	신지선	고전313	신월리 507-1	성천리 1218	2.8		노선변경
고전	농도	합백선	고전314	대덕리 324-15	범아리 산132	1.7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금남	농도	대송선	금남301	대송리 830-2	대송리 289-2	3.0		노선변경
금남	농도	대치선	금남302	대치리 514-8	대치리 844	1.4		노선변경
금남	농도	금오선	금남304	진정리 산108-7	진정리 79	1.6		노선변경
금남	농도	계항선	금남305	계천리 666-48	진정리 산92-3	1.9		노선변경
금남	농도	조상선	금남306	덕천리 703-2	진정리 876-4	2.4		노선변경
금남	농도	덕포선	금남307	덕천리 1465	덕천리 산123-3	2.1		노선변경
금남	농도	환치선	금남308	진정리 1123	진정리 1293-4	2.5		노선변경
금남	농도	송연선	금남309	송문리 245-8	노량리 산6-4	3.0		노선변경
금남	농도	환금선	금남311	진정리 1182	대송리 942	1.3		노선변경
금성	농도	가서선	금성301	가덕리 1600-1	갈사리 924-87	3.5		노선변경
금성	농도	서갈선	금성302	가덕리 1113-151	갈사리 1597	1.8		노선변경
금성	농도	내갈선	금성303	갈사리 675-2	가덕리 1428	3.1		노선변경
금성	농도	가연선	금성304	가덕리 1571-1	갈사리 1227-5	1.3		노선변경
금성	농도	궁가선	금성306	궁항리 1129	가덕리 산54-1	4.1		노선변경
금성	농도	갈명선	금성307	가덕리 1607	고포리 524	3.4		노선변경
금성	농도	신목선	금성308	궁항리 1391-3	궁항리 1612	1.3		노선변경
금성	농도	신평선	금성309	가덕리 1113-100	가덕리 1160	0.8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금성	농도	신도선	금성310	궁항리 1337-68	궁항리 1477	0.7		노선변경
진교	농도	하포선	진교301	송원리 1229	송원리 1240	1.5		노선변경
진교	농도	술상선	진교302	술상리 580-1	술상리 739	2.9		노선변경
진교	농도	관월선	진교303	관곡리 400-5	월운리 154-1	4.4		노선변경
진교	농도	반석선	진교304	관곡리 415	고이리 1192	2.9		노선변경
진교	농도	송화선	진교305	송원리 1220	송원리 산28-1	1.2		노선변경
진교	농도	구대선	진교306	양포리 266-1	양포리 404	1.5		노선변경
진교	농도	원동선	진교307	고룡리 97-3	고룡리 88-3	5.6		노선변경
진교	농도	백련선	진교308	백련리 49-3	안심리 556	0.9		노선변경
진교	농도	신기선	진교309	백련리 208-8	고룡리 508	3.0		노선변경
진교	농도	안심선	진교310	안심리 405-1	백련리 661	1.3		노선변경
진교	농도	화평선	진교311	송원리 847-9	송원리 847-8	1.8		노선변경
진교	농도	화포2선	진교313	송원리 847-13	송원리 50-35	0.9		노선변경
진교	농도	화포3선	진교314	송원리 1227	송원리 1232	0.9		노선변경
진교	농도	화포선	진교315	송원리 51-594	송원리 1225	0.7		노선변경
진교	농도	술상선	진교316	술상리 628-4	술상리 720	1.3		노선변경
양보	농도	하피선	양보301	우복리 1469-11	우복리 산154-2	1.8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양보	농도	지례선	양보302	박달리 1299-2	박달리 1203	2.6		변경없음
양보	농도	운암선	양보303	장암리 325-4	운암리 1020-3	2.0		노선변경
양보	농도	신운선	양보304	장암리 564-16	장암리 산157	5.2		노선변경
양보	농도	서재선	양보305	통정리 산29	우복리 산234-2	0.6		노선변경
양보	농도	대내선	양보306	우복리 849-1	통정리 453-11	1.7		노선변경
양보	농도	섬백선	양보307	우복리 881-4	우복리 268-3	0.6		노선변경
양보	농도	구청선	양보308	통정리 147-1	장암리 산37	1.5		노선변경
북천	농도	금촌선	북천302	사평리 468-1	방화리 1001	2.1		노선변경
북천	농도	모방선	북천303	사평리 448-4	사평리 822-1	1.6		노선변경
북천	농도	마서선	북천304	화정리 1561-1 4	화정리 1255-1	2.1		노선변경
북천	농도	화정선	북천305	화정리 212-3	화정리 433-8	1.8		노선변경
북천	농도	빙시선	북천306	옥정리 337-2	서황리 635-2	3.0		노선변경
북천	농도	신직선	북천307	직전리 산132-5	직전리 1447	2.3		노선변경
북천	농도	이명선	북천309	직전리 673	옥정리 26-2	1.3		노선변경
청암	농도	사동선	청암301	평촌리 211	명호리 1164-2	3.0		노선변경
청암	농도	천은선	청암305	목계리 1463	목계리 산320	0.9		노선변경
청암	농도	청학선	청암306	목계리 1749-4	목계리 1560	0.7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 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청암	농도	회남선	청암307	목계리 산320	목계리 548-7	2.1		노선변경
옥종	농도	두방선	옥종301	두양리 1116	두양리 1107	1.1		노선변경
옥종	농도	주중선	옥종302	청룡리 1022-1	청룡리 산116-1	2.3		노선변경
옥종	농도	안계선	옥종303	문암리 410	안계리 801-1	3.5		노선변경
옥종	농도	종화선	옥종304	종화리 204-4	문암리 401	1.0		노선변경
옥종	농도	숲촌선	옥종305	두양리 410-2	두양리 산68	3.1		노선변경
옥종	농도	안병선	옥종306	안계리 616	병천리 978	3.3		노선변경
옥종	농도	상촌선	옥종307	병천리 1021	청룡리 1017-1	1.6		노선변경
옥종	농도	주월선	옥종308	청룡리 190-1	병천리 911	1.1		노선변경
옥종	농도	범대선	옥종309	대곡리 504	양구리 435-7	3.1		노선변경
옥종	농도	범한선	옥종310	범대리 653	대곡리 산142-11	2.1		노선변경
옥종	농도	추동선	옥종311	범대리 409-2	대곡리 52-9	2.3		노선변경
옥종	농도	북방선	옥종312	북방리 950	북방리 941	0.8		노선변경
옥종	농도	병대선	옥종313	병천리 903	대곡리 278-5	4.5		노선변경
옥종	농도	청정선	옥종314	양구리 430-2	정수리 70-3	4.2		노선변경
옥종	농도	정수선	옥종315	정수리 935	정수리 산80	2.5		노선변경
옥종	농도	북대선	옥종316	대곡리 1111	북방리 897	3.4		노선변경

읍면	도로의 종 류	노선명	노 선 번 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변경) 고시사유
				기 점	종 점			
옥종	농도	미산선	옥종317	양구리 509-1	양구리 3-7	1.5		변경없음
옥종	농도	북방1선	옥종318	북방리 57-5	대곡리 45-1	1.4		노선변경
옥종	농도	덕채선	옥종319	정수리 산53	정수리 70-4	1.5		노선변경
옥종	농도	상초선	옥종320	위태리 1335-4	위태리 산62-4	2.7		노선변경
옥종	농도	오대선	옥종321	궁항리 1355	위태리 산109-1	1.9		노선변경
옥종	농도	윗골선	옥종322	궁항리 1104-4	궁항리 1392	1.4		노선변경

하동군 고시 제2019 - 45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20.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35-10 외 3필지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3.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하동읍 비파리 195	경상남도 하 동군 하동읍 군청로 135-10	2019 0320		2007 0618	하동군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 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 용 도로명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금성면 궁항리 1101-18	경상남도 하 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41	2019 0320		2009 0302	금성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로 금성중앙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악양면 신성리 979-1	경상남도 하 동군 악양면 성두길 44-9	2019 0320		2007 0618	마을 앞뜰에 고인돌이 북두 칠성 별자리처럼 놓여져 있 었다는 지형적 조건에 유래 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 동군 적량면 서리 1537-2	경상남도 하 동군 적량면 중서길 60-153	2019 0320		2007 0618	중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19 - 46호

#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목적 :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일원을 지역의 특성에 따른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역량강화를 통하여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농업 발전거점으로 육성
3. 총사업비 : 5,826,000천원(국비4,078,000천원, 지방비1,748,000천원)
4.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소다사복합문화관, 소다사홍보관, 소다사마당, 소다사 중심가로 정비, 소다사 건강길 정비
  - 지역역량강화(S/W)사업 부분
    - 교육, 컨설팅, H/W 운용프로그램, 운영지원, 부대비용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수탁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
6.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1년(4년간)
7. 관계도서배치 :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055-880-5156),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4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사업명 : 악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세 부 사업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소다사복합문화관	악양면정서리	268	차	4,213	4,213	하동군		
	악양면정서리	271-19	대	770	770	하동군		
소다사홍보관	악양면정서리	271-7	잡	850	850	하동군		
	악양면정서리	271-29	잡	374	66	하동군		
소다사마당	악양면정서리	279-2	대	720	615	하동군		
	악양면정서리	279-7	대	39	39	하동군		



하동군 공고 제2019-343호

##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민원서류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 요구 감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주민이 상수도 관련시설인 특수가압시설 설치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사용승낙서로 대체(안 8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4월 8일까지 하동군(참조 : 수도사업과, 전화055-880-2592, FAX055-880-2599, imbc@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군은”을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인감증명서”를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하동군 수도급수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u>조례</u> 제4조제1호 중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p>1. 2.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u>조례</u> 제6조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군</u>은 급수장치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5. ~ 7. (생략)</p> <p>제8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생략)</p>	<p><u>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하동군 수도급수 조례</u>」 ----- ----- -----.</p> <p>제2조(정의) ① 「<u>하동군 수도급수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 -----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하동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 <u>는</u> ----- -----.</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8조(특수가압시설의 허가기준 및 기부채납) ① (현행과 같음)</p>

②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이용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기부채납원 및 인감증명서
- 6.·7. (생략)

③ (생략)

제16조(공용급수전의 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공설 공용급수전과 선박 철도용 급수대행인은 해당 급수전에서 1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선박용 급수에 있어서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한다.

②·③ (생략)

②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5. ----- 자필서명된 사 용승낙서와 신분증 사본
- 6.·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용급수전의 관리) ① ---  
-----  
-----  
-----  
-----  
-----  
-----.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장-----  
-----.

②·③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9 - 353호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3 월 19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유성준·이선유 명창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 발전 및 선양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격조높고 품격있는 판소리체험관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변경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하동군판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명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으로 변경
  - 나.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1호, 제3조 ①항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변경 다.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변경(조례전반)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은 2019년 4월 8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체육과, 전화

880-2368, FAX 880-236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념관의 명칭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하동군 물품 관리조례」”를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체험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이용구분	기준	이용시간		이용요금	비고
체험시설 (체험, 교육)	평일	전일	09:00~18:00	50,000원	
		오전	09:00~13:00	25,000원	
		오후	13:00~18:00	25,000원	
		야간	18:00~22:00	40,000원	
	토요일· 공휴일	전일	09:00~18:00	70,000원	
		오전	09:00~13:00	35,000원	
		오후	13:00~18:00	35,000원	
		야간	18:00~22:00	50,000원	

※ 이용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우천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숙박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이용시간	일~목요일	금~토요일, 공휴일 앞날
숙 박	전통한옥 체험관	1박(1실 4명)	14:00 부터 ~ 다음날 10:00 까지	35,000	50,000

[별지 제1호 서식]

###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또는 개인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이용일시	년 월 일( : ~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비 고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서

신 청 인	주 소			
	개인 또는 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이용일시	년 월 일( : ~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체험관 시설 이용을 (  신규,  변경 )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취소·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개인 또는 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이용일시	년 월 일( : ~ : )			
이용목적 (행사명)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이용일시			
	기 타			
비 고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체험관 시설 이용승인을(  취소,  변경 )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수탁신청서

- 1. 시설명 :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 2. 신청자 기재사항

단체명 또는 개인		단 체 구 분	
승인(등록)기관		승인(등록)일자	
승인(등록)번호		목 적 사 업	
대표자 성명		대표자 또는 개인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 또는 개인 주소			
단체 또는 개인 소재지			

###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 나.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이력서
- 다. 사업자등록증 1부.

### 4. 약정사항

- 가. 수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 나.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단체 대표자 및 개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수탁 결정 통지서

시설명 :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단체 또는 개인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17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 군과 협약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7호 서식]

#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 안

## (재산의 표시)

소재지 :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시설물 :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위 표시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운영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하동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기간) 갑은 위 표시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준수사항) ① 을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조(민·형사상 책임 등) ① 을은 시설물 관리 운영 시 주의의무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피해 당사자 또는 갑에게 전액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갑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을은 시설을 수탁 관리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조건)** ① 본 위탁 재산 일부를 갑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하되, 특히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 또는 탐방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해지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등 모든 시설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해지통보)** 갑과 을이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상회복)** 을이 사용한 시설물을 갑에게 반납할 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예정일)** ① 관리운영 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을이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하동군 관련 조례 등의 제

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 없거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협약서의 효력 등)** ①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하고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 (인)

을 (수탁자) :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 출신의 동편제 명창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u>하동군 판소리 체험관</u>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체험관</u>"이란 <u>하동군 판소리 체험관</u>의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u>체험관</u>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p> <p>4. "이용료"란 <u>체험관</u>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3조(명칭 및 위치) ① <u>체험관의 명</u></p>	<p><u>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u>----- -----.</p> <p>제2조(정의) ----- -----.</p> <p>1. "<u>기념관</u>"--- <u>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기념관</u> ----- -----.</p> <p>4. ----- <u>기념관</u> ----- -----.</p> <p>제3조(명칭 및 위치) ① <u>기념관의 명</u></p>





매일 개관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7조(이용시간) ① 체험관의 이용시  
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  
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8조(이용료) ① 체험관의 시설 중  
전시실 · 감상실의 이용료는 무료  
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  
설의 이용료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 ③ (생 략)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  
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2. 체험관 내에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생 략)

제12조(시설이용 승인) ① 체험관 시  
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  
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승  
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시실 및 감상실만을 이용하고자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시간) ① 기념관-----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이용료) ① 기념관-----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의 제한) -----

-----

----- 기념관-----

-----.

1. (현행과 같음)

2. 기념관

-----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이용 승인) ① 기념관 -

-----

-----

-----

-----.

할 때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③ (생략)

제13조(이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2. (생략)

3. 체험관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변상책임) ① (생략)

② 체험관 내 시설물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하동군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생략)

②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생략)

제16조(위탁운영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

-----  
-----  
-----  
-----.

1.·2. (현행과 같음)

3. 기념관  
-----  
-----

제14조(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념관 -----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15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념관-----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운영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유재  
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  
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  
다.

제18조(위탁사용료) ① 체험관의 위  
탁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한  
다.

②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체  
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가  
산정 사용비용을 상계하여 위탁 사  
용료로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  
여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한다.

제20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선양사업  
과 그 밖의 판소리 관련 사업 추  
진, 그 외 체험관 운영 등을 위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조제3항-----  
-----  
-----  
-----.

제18조(위탁사용료) ① 기념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

② -----  
기념관-----  
-----  
-----.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보조금 등 지원) ① -----  
-----  
-----  
----- 기념관 -----  
-----  
-----.

② -----  
----- 「하동군 지방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생략)

③ 수탁자가 체험관 내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체험관 운영 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⑥ 체험관의 운영·관리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⑦ 수탁자는 체험관의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기념관 -----  
-----  
-----.

④ ----- 기념관 -----  
-----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념관-----  
-----  
-----.

⑦ ----- 기념관 -----  
-----  
-----.

⑧ ----- 기념관 -----  
-----  
-----.

하동군 공고 제 2019 - 312 호

##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2. 제안 이유

- 2019.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회원제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앞서
- 국토부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운행범위, 바우처 택시, 회원제 등에 대한 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한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함.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3. 주요 내용

- 가.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제3조~6조)
- 나.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차량에 관한 사항(제7조~9조)
- 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제10조~13조)
- 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9조)
- 마.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에 관한 사항(제17조)

바. 이동지원센터 서비스 평가 등 (제18조, 제20조)

사.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제15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하동군(참조 : 건설교통과, 전화 055-880-2397, FAX 055-880-2509, geen43@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관광산업국장, 주민행복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원

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임신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인 확인 서류
  -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인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철도요금 또는 농어촌버스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철도요금 또는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요금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요금 기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공보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 4. 민간단체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상남도지사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 장애 급)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 체 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특이사항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mm×297mm

[뒤쪽]

### 신청서 작성 안내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 확인 서류
    -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 약 서

본인은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하동군 공고 제2019 - 363호

##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 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0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읍 LH 국민임대주택 읍내리 사업지구 확정을 위한 아파트 부지 경계 일부조정
  - 아파트 부지 필지를 하나의 읍내리 필지로 통합하기 위한 리명칭 변경 (광평리 2필지 6㎡ → 읍내리 변경)

### 3. 주요 내용

소재지	면적(㎡)		증감면적(㎡)		다른지역으로부터 편입		다른지역으로 이동	
	변경전	변경후	증	감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광평리 294-7	3	0	-	3	-	-	읍내리 185-11	3
광평리 295-15	3	0	-	3	-	-	읍내리 185-12	3
읍내리 185-11	0	3	3	-	광평리 294-7	3	-	-
읍내리 185-12	0	3	3	-	광평리 295-15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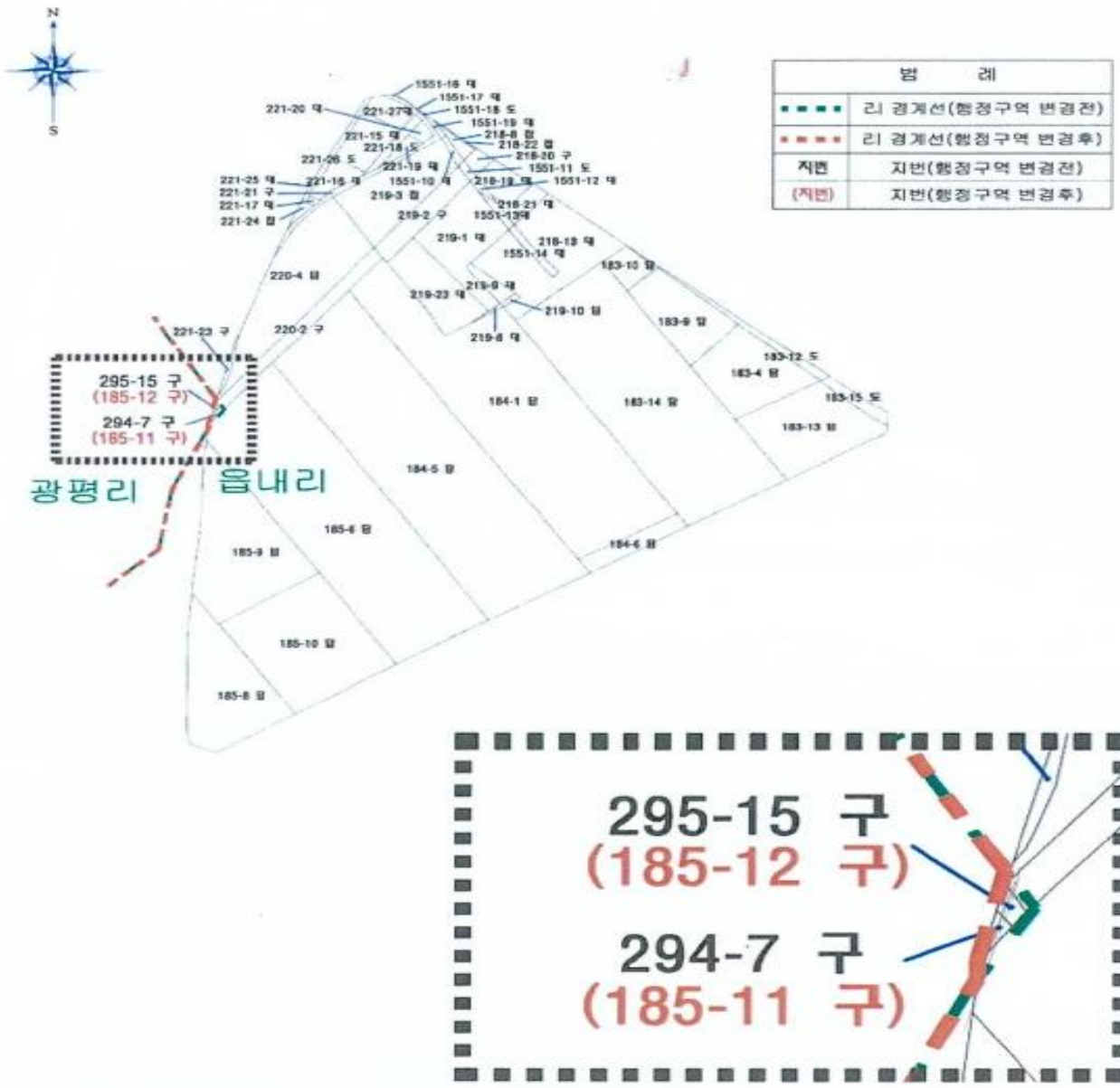
### 4. 참고자료

현재의 행정구역 명칭			지 번	지 목	총면적 (m <sup>2</sup> )	이동 면적 (m <sup>2</sup> )	비 고
시 · 군 · 구	구 · 읍 · 면 · 동	리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94-7	구거	3	3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95-15	구거	3	3	

## 행정구역변경도

하동읍내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LH천년나무아파트)

축척 1200분의1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은 2019년 4월 10일까지 하동군 행정과(전화 880-2155,  
FAX 880-2159, [ultra3401@korea.kr](mailto:ultra3401@korea.kr))에

**【별지 서식】** 을 작성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별표 신·구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읍면별	리명칭	구 역	읍면별	리명칭	구 역
하동읍	읍내리	읍내리 일원	하동읍	읍내리	읍내리일원 (추가지번 185-11, 185-12)
	광평리	광평리 일원		광평리	광평리 일원 (제외지번 294-7, 295-15)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325호

## 2019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재공고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3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2명	2년	보건소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무분야	인원 (명)	직급	직무내용	비고
간호사	2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사업</li> <li>· 치매조기검진사업</li> <li>· 치매예방관리사업</li> <li>· 쉼터(상시운영)운영사업</li> <li>· 치매가족지원사업</li> <li>·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li> <li>· 치매노인성년후견사업</li> <li>· 치매안심마을운영사업</li> <li>·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ul>	주35시간 (주5일) 09:00~17:00 0

###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4. 응시 자격 기준

####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나. 자격요건

종별	채용 분야별 면허(자격)조건
간호사	○ 의료법 제2조의 2,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가능한 자
-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가능한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보건, 민간기관 등에서 치매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보수 수준

※ 산출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준용

※ 기 본 급 :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연봉상한액(46,456천원)을 기준, 업무성격을 감안,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업무성격 : 상한액의 50%적용

└ 근무시간 : 87.5%적용(주35시간 근무)

$$46,456\text{천원} \times 50\%(\text{업무성격}) \times 35/40 = 20,325,000\text{천원}$$

**【연기본급 20,325,000원/월기본급1,693,710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19. 3. 13(수)	'19. 3. 13 ~ '19. 3. 22	서류전형	-	'19. 3. 25
		면접시험	'19. 3. 27	'19. 3. 29

- ※ 응시원서 기 제출자 서류 제출 불요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19. 3. 13 ~ 2019. 3. 22 / 10일간
-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계(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8급이하 5,000원)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8급 이하 - 5,000원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http://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보 건 소(☎ 055-880-6602)

- ※ 별지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b>※응시번호</b>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소	(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b>※응시번호</b>		<b>응 시 표</b> (지방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성명				
주민등록 번호		-				
2019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뒷 면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  
 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3 >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 붙임 5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

하동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사진 및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이메일,휴대폰번호,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 전·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19. . .

작성자    성명 :                    (서명)



#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공고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공고 제 2019-320 호

1. 공매에 부치는 사항 : ( 32구6055 )(공매차량의 내역 참조)

2. 입찰등록기간 : 2019 년 03 월 13 일 ~ 2019 년 03 월 25 일 (23:00)

**※ 공매행정상의 착오방지 및 공매진행의 신속·정확함을 위해 입찰자와 지정계좌 입금자는 일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 입찰등록기간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은 등록마감일 까지
- ※ 입찰서작성 및 제출은 입찰기일 내 제출
- ※ 입찰서 작성 및 제출은 입찰기일 내 제출
- ※ 배분요구 중기 : 2019 년 03 월 25 일
- ※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받을 수 있는 채권

3. 입찰장소 :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19 년 03 월 26 일 (14:00),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oodinfocar.com>)

5. 입찰 방법

-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등을 입력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 입금전용계좌 - 입찰 후 별도 통보 **기존 계좌로 입금시 미입금 처리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의한다.
-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③ 입찰등록기간이 완료되면 곧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며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이상일 때에는 컴퓨터가 자동추첨을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결된 후 7일 이내에 반환 청구한 구좌로 반환합니다.
- ⑤ 1회 공매시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재공매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 ① 지방세징수법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매수인이어야 합니다.

7. 낙찰대금 납부

- ① 매각결정일 : 2019 년 03 월 26 일
- ②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8. 기타

- ①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공부열람 및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된 후 차량인수에 필요한 제반사항(배터리, 오일, 연료 등)을 낙찰자 본인이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②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후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및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매각진행중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매체결전 인수 가능하며 지방세징수법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차량에 대한 공매는 취소됩니다.
- ④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비용 등
  -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등 말소 등록면허세(건당 15,000원)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됨)
- ⑤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등
  - 본인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장 대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
  - 개인사업장의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 대리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도장
- ⑥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하동군 재정관리과 (055-880-2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년 03 월 12 일

경상남도 하동군수

하동군 공고 제2019-350호

## 하동군 다자녀 가족 행복 수기 공모

결혼·출산·양육의 가치와 소중함을 공유하고 가족·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하동군 다자녀 가족 행복 수기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3. 18.

하 동 군 수

1. 공 모 명 : 하동군 다자녀 가족 행복 수기 공모
2. 공모기간 : 2019. 3. 18.(월) ~ 5. 17.(금) [2개월간]
3. 응모자격 :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누구나 참가가능
4. 공모내용 : 다자녀 가족 행복 수기

### 【공모주제】

- 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체험한 다양한 기쁨과 보람
- ② 가정이 겪은 어려움을 자녀와 가족이 함께 극복한 사례
- ③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육아 경험 수기
- ④ 결혼 후의 행복함, 아이를 낳고 키우며 느낀 삶의 소중함, 가족간의 사랑

5. 응모방법 : 이메일, 팩스(FAX),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이 메 일 : 담당자 이메일(hadong2020@korea.kr)로 응모신청서 및 수기 제출
  - ※ 파일제목 : 하동군 다자녀 가족 행복 수기 공모(성명)
  - 팩 스(FAX) : 055-880-2159
  - 우편 또는 방문 :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2층 행정과 인구정책담당
6. 작성형식 : 산문형식, 분량 A4 2~3매
  - 한글 워드프로세서 작성, 휴먼명조 13포인트, 줄 간격 160%

7. 시상내역

구 분	인원	시상금
계	8명	총 160만원
1등(최우수)	1명	50만원
2등(우수)	2명	60만원
3등(장려)	5명	50만원

- ※ 참가상 : 1차 선발(심사위원 심사)전에 대하여 상품권 1만원권 지급(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자는 제외)
- ※ 심사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응모건수와 제안수준에 따라 시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8. 결과발표

- 하동군 홈페이지(www.hadong.go.kr) 게시 및 수상자 개별통지

9. 유의사항

- 응모작이 타 공모전에서 이미 수상하였거나 표절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수상 이후라도 입상 자동 취소 및 환수 조치.
- 당선작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하동군에 귀속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심사점수는 공표하지 않으며,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응모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당선작이 없을 수 있음.
- 허위·착오 기재 및 기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자 본인의 책임임.
- 선정작은 저출산 극복 및 인식개선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10. 문 의 처 : 하동군 행정과 인구정책담당 (☎055-880-2843)



하동군 공고 제2019 - 356호

## 하동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하동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9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9일

# 하 동 군 수

1. 공고기간 : 2019. 03. 19. ~ 2019. 04. 08.(20일간)
2. 공고방법 : 공보, 게시판,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원인자부담금), 하동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m<sup>3</sup>이상 증가하는 건축물(개별건축물 등)
  -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
5. 대상지역 : 하동군 하수처리구역 내

## 6. 공고내역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별표 부과기준 참조

나.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4,245,000원/m<sup>3</sup>

## 7. 시행일 : 2019년 4월 09일

- 시행일 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단가 적용

##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19.04.08(월)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공항길 298-23

- 팩스 : 055-880-2599

- 문 의 처 : 하동군 수도사업과(055-880-2606)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별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하동군

(단위 : 천원)

용 량		부과액	㎡당 단가	용 량		부과액	㎡당 단가
㎡/일	인용			㎡/일	인용		
1	5	1,800	1,200	60	300	61,000	900
2	10	3,000		70	350	70,000	
3	15	4,200		80	400	79,000	
4	20	5,400		90	450	88,000	
5	25	6,600		100	500	97,000	
6	30	7,800		110	550	105,000	
8	40	10,000	1,100	120	600	112,000	700
10	50	12,200		130	650	118,000	600
15	75	17,000	1,000	140	700	123,000	500
20	100	22,000		150	750	127,000	400
25	125	27,000		160	800	131,000	400
30	150	32,000		170	850	135,000	400
35	175	37,000		180	900	139,000	400
40	200	42,000		190	950	143,000	400
45	225	47,000		200	1,000	147,000	400
50	250	52,000		250	1,250		

# 의 견 제 출 서

1. 행정 예고 내용		하동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2.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386호

##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하동군 고시 제2019-274호 및 제2019-325에 의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5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서류전형 합격자

임용예정 부 서	분 야	채용등급	선발예정 인 원	서류전형 합격자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 전문인력 간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2	2019-3-1 김○라 2019-3-2 이○영 2019-3-3 최○화 2019-3-4 이○자

### 2. 면접 일정 및 장소

채용분야	면접 시험				비고
	일 자	등록시간	면접시간	장 소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019. 3. 27(수)	14:20	15:00 ~ 16:00	하동군청 상설회의장	(본관 2층)

※ 면접시간은 유동적임.

3. 최종합격자 발표 :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http://www.hadong.go.kr>)

### 4. 응시자 주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등록시간까지 등록장소에 도착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채용분야의 면접시간 종료시까지 도착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면접일자 3일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사항은 하동군 행정과(☎055-88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면접장소 위치

- 등록 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본관 2층)
- 면접시험장 : 하동군청 상설회의장(본관 2층)
- 주 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